

대법원

제1부

판결

사건 2004다36611 손해배상(기)

원고, 상고인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경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승규

소송수행자 연○○, 이○○,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 6. 16. 선고 2003나84332 판결

판결선고 2004. 10. 1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면, 녹색연합은 1991년 6월경 설립된 환경단체로서, 원고들 중 권○○, 김○○, 남○○, 박○○, 박○○, 이○○은 녹색연합의 자원활동가들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녹색연합의 상근활동가들인 사실, 녹색연합은 ‘2002년 녹색순례’라는 이름으로 2002. 5. 7.부터 2002. 5. 14.까지 7박 8일간 군산시, 화성시 우정면 매향리, 평택시 등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을 도보 또는 차량으로 순례하면서 미군기지에 의한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한다는 행사를 계획하고, 마지막 날인 2002. 5. 14. 11:00부터 1시간 동안 용산 미군기지 1번 게트 앞에서 위 행사를 정리하는 ‘2002년 녹색순례 보고대

회'를 갖기로 하여 2002. 5. 5. 종로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를 하였는데, 옥외집회 외에 시위(행진) 방법이나 진로에 관한 신고는 없었던 사실, 위 보고대회는 2002. 5. 14. 11:00경 위 장소에서 개최되어 원고 서○○의 사회로 11:45경까지 진행되었으며, 원고 서재철은 폐회를 선언하면서 나머지 원고들에게 소지한 피켓을 모으고 깃발을 접은 다음 타고 갈 버스가 주차되어 있는 녹사평역 방향으로 집단을 이루지 말고 한사람씩 10보의 간격을 유지하며 출발하라고 지시한 사실, 원고들 중 선두 일부가 녹사평역을 향하여 출발하려 하자, 당시 현장책임자였던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원고들이 신고하지 않은 행진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소속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원고들을 둘러싸서 제지하고, 불법적인 시위 행진에 해당되니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 사실, 원고들은 경찰의 포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통행권을 보장하라', '정보과장 해명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농성을 벌였고, 그러는 가운데 일부 원고들이 차례로 나서서 경찰을 성토하는 연설을 하였으며, 취재하던 일부 방송기자 등도 경찰의 제지에 대한 항의에 따라 나서기도 한 사실, 경찰이 원고들의 해산을 위하여 녹색연합에서 마련한 버스를 집회장소로부터 50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여 대기시키고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원고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13:00경 귀가차량을 지나쳐 남영역 방향으로 50 내지 60m 정도 진행하였고, 경찰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발생한 사실, 원고들은 항의를 계속하다 같은 날 14:10경 위 버스를 타고 귀가한 사실, 원고들의 집회장소인 1번 게이트 앞에서 녹사평역까지 약 1.5km 구간에 용산 미군기지의 주요 출입구인 5번, 7번 게이트가 있고, 특히 5번 게이트는 'SOFA개정 국민행동' 등의 단체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곳이었으며, 녹색연합도 2000. 7. 24. 인접한 국방부 정문 앞에서 미군의 사파를 요구하는 미신고 기습집회를 개최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들이 진행하려던 장소가 불법시위의 발생이 잣고 외국군 주둔시설의 주변으로서 경찰에 의한 경비의 필요가 큰 곳이며, 원고들은 미군의 정책 등을 비판하는 집회를 마친 후 피켓 등 시위용품을 소지한 채 약 1.5km나 되는 거리를 미군기지의 주요 출입구가 있는 곳으로 지나 수십명이 함께 이동하려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경찰로서는 원고들이 신고하지 아니한 불법 행진시위를 한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이 있었다 할 것이고, 경찰은 원고들의 진행을

제지하는 한편 원고들의 귀가차량을 이동시켜 그 자리에서 해산할 방도를 마련해 주었으며, 원고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다소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지만, 경찰의 행진 저지의 방법이나 수단이 시위 진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현장에서 허용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시위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에게 시위행진의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미신고 불법시위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지한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에 피고의 책임을 물을 만한 과실은 없었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이규홍

주 심 대법관 윤재식

대법관 이용우

대법관 김영란

원 고 들통록

1. 고○○

2. 구○○

3. 권○○

4. 김○○

5. 김○○

6. 김○○

7. 김○○

8. 김○○

9. 남○○

10. 남○○

11. 박○○

12. 박○○

13. 박○○

14. 서○○

15. 서○○

16. 송○○

17. 염○○

18. 윤○○

19. 이○○

20. 이○○

21. 이○○

22. 이○○

23. 이○○

24. 장○○

25. 정○○

26. 정○○

27. 정○○

28. 정○○

29. 정○○

30. 조○○

31. 지○○

32. 죄○○

33. 한○○

34. 흥○○